

●국토해양부령 제56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항까지만을”을 “제8항까지만을”로, “제7항까지의”를 “제8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을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중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7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사업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약관등 보증내용(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다)을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 중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을 “소유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8호 및 별표 1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계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인정기준을 완화하며, 분양보증과 관련한 주택 분양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공급계약 시 분양보증기관의 보증내용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3조제2항제18호)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재외국민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입주자의 범위에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주택 청약가능지역 거주자의 공급대상 명확화(안 제19조제9항제1호)

동일 생활권역별로 주택 청약가능지역이 확대된 것을 반영하여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시 우선 순위 선정 방식을 지금까지 수도권 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주택 청약가능지역 거주자가 해당 주택 청약가능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함.

다. 주택공급계약 시 분양보증기관의 보증내용에 대한 사업주체의 설명의무 등(안 제27조제6항 신설)

분양보증과 관련한 주택 분양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간 사업주체로 하여금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분양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 보증약관 등 분양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확인을 받도록 함.

라. 주택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안 별표 1 제1호가목)

주택청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청약 가점제의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경우에 그 소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 그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국토해양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344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6(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침수흔적 확인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침수흔적확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 제2호의5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